

# 모로코 (Morocco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3.96% / 적용제외 / 7.93%	3.96% / 적용제외 / 7.93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6,000 / 2,568.84 dirhams	6,000 / 2,570.86 dirhams	하한소득 ↑
연금수급 개시연령	60세	60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3,240일	3,240일	-
노령연금 지급률(40년 기준)	70%	70%	-
일시금	가입자 보험료의 현재가치	가입자 보험료의 현재가치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59년
- 현행법 : 1972년(사회보장제도), 1981년(농·임업근로자), 1996(최저연금), 2014년(보험료상환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공업, 상업, 농업, 자유직종의 민간부문 임금 근로자와 견습생, 협동조합의 근로자, 공예가, 특정부문의 어부
- 임의적용 : 이전에 당연적용 대상이었던 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
  - ※ 2017년에 자영자와 자유직종의 비임금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이 통과됨
- 특별제도 : 공무원 및 기타 특정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

## 4 재원조달

- 가입자 : 월 소득의 3.96%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

- 법정최저임금 : 월 2,570.86 dirhams(비농업부문), 1,812.98 dirhams(농업부문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은 6,000 dirhams
  - 가입자 보험료는 사망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노령, 장애, 유족연금의 재원임
- 사용자 : 월 소득의 7.93%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법정 최저임금과 동일
  - 법정최저임금 : 월 2,570.86 dirhams(비농업부문), 1,812.98 dirhams(농업부문)
 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상한소득은 6,000 dirhams
  - 사용자 보험료는 사망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노령, 장애, 유족연금의 재원임
- 정부 : 없음

## 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- 가입기간이 3,240일 이상인 60세(5년 이상 갱내에서 근무한 광부는 55세) 도달자로서 고용에서 퇴직한 자
  - 근로 중단 필요
    - ※ 연금수급연령 도달 시점에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임의계속 가입 하여 보험료 납부 가능
  - 조기연금 : 가입기간 3,240일 이상인 55세 도달한 자.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 때까지 수령하는 조기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재원조달에 동의해야 함
  - 노령일시금 : 1999년 12월 이후 60세 도달하고, 가입기간 3,240일 미만인 경우 지급
- 장애연금
- 소득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로서 장애발생 직전 12개월 동안의 108일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이 1,080일 이상인 자
  - 우발적 사고에 의한 장애는 최소 가입기간 요건 없음
  - 상시간호수당 : 일상생활에 상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
  - 장애연금은 은퇴연령 도달 시 정지 되고, 노령연금으로 대체
- 유족연금
- 사망 시 가입자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자였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
  - 수급권자 : 배우자, 16세미만 고아(견습생인 경우 18세, 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아는 제한 없음)
  - 유족일시금
    - 사망자가 2000년 1월 이후에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사망 시 가입기간이 3,240일 미만
    - 수급권자 : 배우자, 16세미만 고아(견습생인 경우 18세, 학생인 경우 21세, 장애아는 제한 없음)
  - 사망보조금
    - 사망자가 사망 전 6개월 중 최소 54일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질병수당을 받았거나 노령

- 혹은 장애연금 수급자였던 경우 지급
- 사망이 사고사였는지 여부는 불필요
- 수급권자 : 배우자, 고아, 부모,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불한 사람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### ○ 노령연금

- 최종 96개월간 월 평균소득의 50%에 3,240일 초과 가입기간 216일 당 월 평균소득의 1%씩 가산 지급
- 급여 산정을 위한 최대 월 평균소득 금액은 6,000 dirhams
- 최저연금액 : 1,000 dirhams
- 최고연금액 :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70%
- 조기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
- 급여는 월 또는 분기 지급
- 연금액은 정기적으로 조정
- 노령일시금 : 근로자 보험료의 현재가치로 일시금 지급. 보험료 현재가치는 연금적립 기금의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됨

### ○ 장애연금

- 최종 12개월 혹은 60개월 동안의 월 평균소득 중 더 큰 액수의 50%에 3,240일 초과 가입기간 216일 당 월 평균소득의 1%씩 가산 지급
- 급여 산정을 위한 최대 월 평균소득 금액은 6,000 dirhams
- 상시간호수당 : 최종 12개월 혹은 60개월 동안의 월 평균소득 중 더 큰 액수의 10%
- 연금최고액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70%
- 급여는 월 또는 분기 지급
- 연금액은 정기적으로 조정

### ○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
- 고아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25%를 고아 1인당 지급하며, 완전고아는 50%를 지급
- 고아연금 총액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음
- 연금액은 정기적으로 조정(2007년 7월 최종조정)
- 유족일시금 : 사망자의 노령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
- 사망보조금 : 보통 10,000에서 12,000 dirhams의 금액을 일시 지급

- 고용 및 직업훈련부(Ministry Employment and Vocational Training)
  - 전반적 감독
  - <http://www.emploi.gov.ma>
  
- 국민사회보장기금(National Social Security Fund)
  - 3자 위원회(노·사·정)와 위원장의 관리를 받음
  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 - <http://www.cnss.ma>

<2019년 ISSA 자료>